

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26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년 10월 16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모전과 시민투표 결과에 따라 시민이 가장 선호하는 네이밍을 정식 사업 명칭으로 규정하기 위해 기존 명칭을 변경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'서울안심소득'을 '서울디딤돌소득'으로 명칭 변경(안 제4조, 제8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해당없음

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다. 협의사항

-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-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-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-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사항 없음
- 평가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
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
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
검토의견: 해당없음

라. 기타

(1) 입법예고(2024. 9. 5. ~ 9. 25.) 결과: 의견없음

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※ 작성자: 복지실 안심소득과 박지혜 (☎ 2133-8436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4호 중 “서울안심소득”을 “서울디딤돌소득”으로 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(서울안심소득)”을 “(서울디딤돌소득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서울안심소득”을 “서울디딤돌소득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호 중 “안심소득”을 “서울디딤돌소득”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생활안정지원의 대상) 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4. 서울형 기초보장제도, 서울형 긴급복지, <u>서울안심소득</u> 대상자</p> <p>5. (생 략)</p> <p>② (생 략)</p> <p>제8조(<u>서울안심소득</u>) 시장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5%, 재산기준 326백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중 선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<u>서울안심소득</u>(기준 중위소득 85% 기준액과 가구소득간 차액의 50% 범위 내의 금액을 말한다)을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제4조(생활안정지원의 대상) ① 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----- <u>서울디딤돌소득</u> ----- -----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(<u>서울디딤돌소득</u>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서울디딤돌소득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추계 요약

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3. 미첨부 사유

본 조례안은 시민투표로 인해 선정된 새로운 네이밍을 정식 사업 명칭으로 규정하고 기존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도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.

4. 작성자

복지실 안심소득과 박지혜(☎2133-8436)